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연월일 : 2008. 5. 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라 전담조직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나.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2. 22. ~ 3. 1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 ①시장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홍보
2.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지원) ①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전광역시 출연금
2. 정부 또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본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 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전시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9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홍보
3. 국제회의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3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대상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도시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